

용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(국민·하나·신한은행)에 대출 신청시 필요 서류입니다.

※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,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.

※ 은행 대출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가 반드시 함께 은행에 방문하셔야 됩니다

- ① 본인 및 배우자(예정자) 신분증
- ② 서울특별시 용자추천서
-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
- ④ 구 임대차계약서(계약갱신의 경우)
- ⑤ 계약금(임대보증금의 5%이상)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
-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(1개월이내 발급분)
- ⑦ 주민등록등본 (1개월이내 발급분)
- ⑧-1 재직증명서(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각1부(근로자인 경우)
- ⑧-2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 각1부(자영업자인 경우)
- ⑨-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(근로자)
- ⑨-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(근로자 외)

※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(소득신고 사실없음, 국세청발급분) 지참

- ⑩ 가족관계증명서(1개월이내 발급분(예비신혼부부 포함))
- ⑩-2 임신사실확인서 (의료기관 발급분(임신중인 경우))
- ⑪-1 혼인관계증명서 (기혼자인 경우)
- ⑪-2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(예비신혼부부)

※ 예식장 계약서 또는 장소대관(예약) 확인서, 청첩장 모두 첨부

※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(국민은행 ☎ 1599-9999, 하나은행 ☎ 1599-2222, 신한은행 ☎ 1599-8000)으로 문의바랍니다.

**[대출연장 및 이차지원 예외적용]
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**

대출연장 및 이차지원 예외 적용 신청대상자 협약은행(국민·하나·신한은행)에 대출연장 신청시 필요 서류입니다.

※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,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.

□ 공통 서류

- 주민등록 등·초본(1개월이내 발급분),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, 계약해지 통보서류(내용증명 등), 등기사항 전부증명서(1개월이내 발급분)

□ 유형별 서류

-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(아래 각 호 중 하나)
 1.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(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)
 2.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
 3.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임차주택에 경매/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(아래 각 호 중 하나)
 1. 경매/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/공매 통지서
 2. 압류 및 경매/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 3.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,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
 4. 매각물건명세서 (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, 임대차기간, 보증금, 전입일자, 확정일자,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)
-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(아래 각 호 중 하나)
 1. 소송접수증명원/ 2. 소송계속증명원 / 3. 소제기증명원

※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(국민은행 ☎ 1599-9999, 하나은행 ☎ 1599-2222, 신한은행 ☎ 1599-8000)으로 문의바랍니다.